

도, 공정한 건설 시장 질서 조성 '박차'

도내 종합건설업 등록업체 대상 실태조사 실시·16개 위반 업체 적발·부적격업체 방지위해 모니터링 강화 예정

전북도(도지사 김관영)는 도내 건설업 관련 건설사업자 권익 보호와 위반 업체 경각심 부여를 위해 건설업 실태조사를 실시했다고 13일 밝혔다.

종합건설업 등록업체 1,141개 중 타 시도 전업업체, 등록기준 미달 정황이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통해 16개(24개업종)의 위반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도는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 전환 허용 등으로 업계가 혼란한 틈을 타 부실 건설업체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작년부터 건설업 실태조사를 연 2회로 확대·강화하여 추진하고 있다.

특히, 이번 조사는 최근 1년 타 시도 전업업체, 기술인협회 등록 필수기술 인력 50일 이상 미달업체, 타 건설업체와 사무실 중복 사용 의심 업체 등 이상을 다인화하여 대한건설협회 전북도회와 함께 지난 9월말까지 진행했다.

실태조사에서 확인된 주요 위반 유형으로는 업종별로 정해진 필수 보유 기술인력 미달 사례가 가장 많았으며, 한 사무실에 복수 건설업체 사용 등 사무실 등록기준 미달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근 1년간 타 시도 전업업체 중 4개사를 적발해 위장 전입 등 부적

격업체에 대한 사전 차단 효과도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적발된 업체의 종합업종은 전북도에서, 전문업종은 관할 시군에서 10월 중 청문장처를 거쳐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행정처분은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3호에 의해 영업정지 6개월이며, 최근 3년간 영업정지 사유가 없는 업체에 대해서만 감경이 이뤄질 수 있다.

도는 부적격업체의 도내 건설공사 입찰 참여 등을 방지하기 위해 이번 조사사례를 참고하여 등록단계에서부터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전문업체에 대한 관리 권한이 있는 시군과 협회 등 관련 기관과의 소통 강화 등을 실시하여 협업체계를 강화하고, 지도 점검을 위한 자료 등을 제작하여 정례적으로 배포할 계획이다.

이찬준 지역정책과장은 "등록기준 미달 건설업체는 발매입찰, 공사 품질 저하와 안전사고 등을 일으키며 지역 건설산업 발전을 저해한다"며, "앞으로도 철저한 실태조사를 통해 도내 건설업 질서를 조기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김경수 기자

전북도, 호흡기환자진료센터 운영상황 점검

18-28일 618 개소대상·시설·인력기준·진료수행 등 방문 점검

최근 독감환자가 늘어난 가운데 전북도(도지사 김관영)는 겨울철 호흡기환자 급증과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하여 호흡기환자진료센터 618개소 전체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도점검의 주요 확인사항으로는 △별도 시간, 공간 활용 등 감염을 예방할 수 있는 환경 요건 △의사 간 호사, 진료보조 등 적정인력 배치 △

진단검사, 처방 등 각 기능을 수행할 요건 충족 여부 등이다.

앞서 전라북도에서는 2차례에 걸쳐 원스톱진료기관에 대한 운영상황을 점검한 결과 대부분의 의료기관에서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정권자인 시군에서 호흡기환자진료센터에 대하여 우선, 방문, 서면 등을 통해 운영상황을 점검하고, 실제 작동여부 및 시설기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일부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방문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지도점검을 통해 호흡기환자진료센터 중 코로나19 치료제 처방 또는 대면진료를 시행하지 않는 의료기관을 도려하여 원스톱의료기관을 확대할 계획이며, 겨울철 소아 확진자 발생에 대비하여 소아환자에 대한 진료 여부를 확인하고 진료를 도려할 계획이다.

아울러 원스톱의료기관에는 정부에서 추가 의료수가를 보전해 원활한

치료환경을 만든다.

현재 도내 운영중인 원스톱진료기관은 421개소로 호흡기환자진료센터의 88.0%를 차지하고 있다.

점검결과 지적사항이 발생한 의료기관에 대하여는 1차 현장지도를 실시하고, 진료 수행이 불가능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지정을 취소 계획이다.

노창환 도 감염병관리과장은 "코로나19 확진자의 대부분은 재택치료 중"이라며, "재택치료자에 대한 공백없는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 건강모니터링과 24시간 행정안내센터와 의료상담센터 운영에도 철저를 기하겠다"고 말했다. /김경수 기자

백두대간 산림 전용지 '다시 숲으로'

목장용지로 사용한 무주백두대간 생태식지 복원 내년 1ha 시범사업·모니터링 후 잔여 9ha 확대 추진

전북도 산림환경연구소는 1970년대부터 목장용지로 활용되다 최근 대부 반환된 무주군 무풍면 대덕산 백두대간 지역 도유림이 산림청 산림생태복원 사업 대상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산림생태복원 사업은 자연적·인위적으로 훼손된 산림을 친환경적으로 복원하여 산림 고유의 기능을 유지하고 산림생태계의 건강성을 회복시키기 위한 사업이다.

사업 대상지는 무주군 무풍면 대덕산에서 초점산(삼도봉)으로 이어지는 백두대간 지역에 있는 전라북도 소관 도유림으로 사업비 11억 원이 투입돼 축구장 크기의 14배에 달하는 면적이 다시 숲으로 복원될 예정이다.

복원 대상지가 오랫동안 초지로 활용된 생태적 특성을 고려하여 내년에 1단계 시범사업으로 우선 1ha 면적에 토양복원 및 식

생복원을 마치고, 이후 전문가 자문단 구성과 3년간 모니터링을 통해 2단계 사업(9ha)을 추진하는 '순응적 관리(adaptive management)'를 통해 유연성 있는 산림복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사업 대상지는 과거 초지 조성을 위하여 인위적으로 훼손된 백두대간 지역 내에 위치하고 있어, 백두대간에서 지리산까지 이어지는 한반도의 가장 크고 긴 산줄기인 백두대간 생태복원이라는 역사성 및 상징성 측면에서도 보다 의미 있는 사업이라 할 수 있다.

강해원 전라북도 환경녹지국장은 "이번 산림복원사업이 백두대간지역 내 훼손된 산림생태계 복원을 통해 기후변화대응과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자연기반해법(NbS, Nature-based Solutions)'의 성공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경수 기자

인공어초로 생명력 넘치는 바다 조성

군산·부안 해역 168ha에 인공어초 1161개 신규 설치 인공어초 설치 후 어획 효과... 최근 3년간 평균 4배증가

중요로운 바다를 조성하기 위해 '물고기 집'으로 불리는 인공어초가 전북 앞바다에 설치된다.

전북도(도지사 김관영)는 올해 27억 원을 투입해 인공어초 1,161개를 군산 및 부안 해역 168ha에 신규로 설치한다. 상반기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8월부터 육상에서 제작된 어초는 10월 중순부터 11월까지 바지선과 크레인 이용해 바닷속에 투하될 계획이다.

인공어초는 일명 '물고기 집'으로 불리며, 인위적으로 수산생물의 산란·서식장을 조성하기 위해 만든 구조물로 인공어초 주변에 해초가 형성되어 물고기들이 잘 번식할 수 있는 적합한 환경을 제공한다.

이러한 인공어초 조성사업은 1973년에 처음 시행되어 2021년까지 전라북도 연안 해역 17,611ha에 70,590개가 설치됐으며, 대상 면적의 52%가 설치 완료됐다.

설치된 어초는 매년 한국수산자원공

단에 위탁해 어획 효과를 조사분석하고 있으며, 최근 조사 결과 어초 설치에 따른 어획 효과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보다 최근 3년 동안 평균 4배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나 지역 어업인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또한 어획 효과조사와 함께 부채생물 효과조사, 어초 설치상태 조사 및 어초 어장 주변 폐기물 수거 등의 사후관리를 실시해 인공어초 조성사업 효과를 극대화하고 있다.

나혜수 도 새만금해양수산국장은 "인공어초는 수산생물에 양질의 서식처를 제공해 수산자원 증강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앞으로도 인공어초 조성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수산생태계 복원을 통해 생명력 넘치는 풍요로운 바다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인공어초는 현재 약 7만개의 어초가 설치되어 있으며, 어초가 설치된 후 30년간 5년 단위로 환경영향평가가 이뤄진다. /김경수 기자

군산시, 무탄소 청정에너지 발전사업 추진 협약 체결

한국중부발전-두산에너지빌리티 수소전소터빈 발전사업 구축



정에너지 생산 등은 한국중부발전이 전담하게 되며 오는 2028년부터 실증 운영을 목표로 한다.

한편, 사업부지는 당초 지난 2019년

목재 펄리를 사용연료로 하는 군산 바이오 발전소 건설사업의 실시계획 인가를 군산바이오에너지(한국중부발전)가 신청했지만, 시는 시민 건강

에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점을 사유로 불허가해 행정소송을 진행한 바 있다.

/군산=김판문 기자

손 씻기·마스크 착용... 개인방역 수칙 준수해 주세요.

상속한정승인공고

망 이원길(1938. 7. 7.생 2022. 7. 10. 사망)의 재산 상속에 대한 상속한정승인 신고가 전주지방법원 신용채 사법보좌관의 심판으로 법원에 수리되어 민법 제1032조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채권자 또는 수증자는 공고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청구인에게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기일 내에 신고하지 아니하면 청산에서 제외 될 수 있습니다.

▶사건번호: 2022-단990 상속한정승인 사법보좌관 신용채
▶피상속인: 망 이원길(1938. 7. 7.생 2022. 7. 10. 사망)
최후주소: 전주시 덕진구 만성동로 47 108동 1902호(만성동, 시티프라다움)
▶공고인: 이동훈
▶공고기간: 2022. 10. 14. ~ 2022. 12. 13.
▶상속한정승인수리일: 2022. 10. 12.
▶주소(청구대리인) 김준영
전주시 덕진구 들사평1길 9 (덕진동 1가, 스카이블루빌) 101호 한울법무사사무소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jmaeil.com